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성과와 발전과제 토론회



- 일 시 : 2004. 6. 11(금) 14:00~18:00
- 장 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회의실
- 사 회 : 강경선 / 제주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표 : 고성보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 토 론 : 김정배 / 농협가락공판장 경매과장

최만열 /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 사무총장

강광파 /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김기훈 / 감귤농가

현양준 / 남부청과 상무

최지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환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한동주 / 제주도 감귤과장

김순재 / 표선조합장

오흥식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

이병호 / 농림부장관 정책보좌관

특집 I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성과와 향후과제



강경선 오늘 토론회는 (사)제

주감귤협의회와 (사)농식품신
유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
고, 제주농협지역본부가 후원하

는 토론회로서 앞으로의 정책수
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발
표된 주제발표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 보완대
책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소비자 측면과 산지 측면에서 보는 문제점
과 보완대책을 우선 살펴보고,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
과 정책입안자들이 볼 때의 문제점 및 보완대책, 그리
고 유통명령제 시행에서의 고충 등을 들어보도록 하
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봐 주실 분은 농협
가락공판장에 근무하는 김정배 경매과장, 전국과실
중도매인조합 최만열 사무총장, 소비자 문제를 연구
하는 시민의 모임의 강광파 이사입니다. 김정배 과장
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김정배 작년 처음 시행된 유통

명령제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
었지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작년 유통명령제 시행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출하 초기에는 극조생이 출하되기
때문에 강제착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
고 출하시기의 문제입니다. 작년인 경우 청견, 한라
봉 등의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농가들이
이들 제품에 대해 저장을 하면서 출하시기를 늦추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러 출하를 늦추는
것은 상품의 품질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해년
하우스감귤과 다음해 노지감귤의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는 규제되어야 하

겠습니다.

또한, 수입오렌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은 소비자
들의 인식도 변화시켰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수입산
과일의 가격이 낮아지면 국내산 과일의 가격도 당연
히 싸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산 과일의 품질이 수입산 과일의 품질보다 우월
해야만 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건대, 현재의 상황은 생산과잉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으며, 수입과일과의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
므로 적정가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을 위
한 연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만열 우선 32개 공영도매시
장에 감귤을 출하해주시는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유통명령제 실시로 감
귤 조수입은 800여억원에 달하였
으며 이는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통명령제 실시는 상품의 질 향상, 소비자 만족
도 향상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
서 향후 감귤뿐만 아니라 전 품목에 대해 유통명령제
가 확대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가락시장 등 공영시장의 경매가격은 표준가격 제
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
품질의 상품을 공영시장에 출하함으로써 표준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준가격의
상승은 농가수취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비자들은 4인 가족이 이틀 이내에
소비할 수 있는 소포장 단위(예 : 5kg)을 선호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게 포장 단위의 변화도 모
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농안법 38조 '수탁의 거부



금지 등' 조항을 약용, 좋은 물건은 직거래하고, 중·하품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표준가격을 낮게 형성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농가수취가격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강광파 '적정생산'이라 함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적정생산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일정 이상의 고품질 유지를 기본으로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 유통명령제의 시행은 절반의 성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강제착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재래시장과 같은 제도권 밖의 시장에서는 0번과, 1번과, 9번과, 10번과 등이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0번과 등 소과 판매시 '감귤은 작을수록 맛있다'라는 홍보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즉, 공영시장과 같은 제도권 안의 시장에서는 유통명령제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제도권 밖의 시장에서는 실패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유통명령제 실시로 소비자도득을 보았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얻은 이득이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격은 품질에 대한 댓가입니다. 그러나 감귤이 양질의 품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귤인 경우 8~9브릭스 정도이면 상품입니다. 그러나 오렌지인 경우 평균 11~12브릭스이며, 수박인 경우에도 13브릭스가 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다른 제품보다 감귤의 품질이 좋다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타 과일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하나로 감귤의 '안전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오렌지에는 이러한 농약을 사용하는

데 감귤에는 사용하지 않는거나 농약사용 시기를 명시함으로써 현재 잔류 농약이 없음을 홍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소비자들은 제주감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판매하는 감귤과 트럭에싣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감귤의 가격 차이는 크게는 3배까지 납니다. 왜 이렇게 큰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콜제도입니다. 현재 감귤에 대한 리콜제도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구입한 과일에 문제가 있어 전화를 하면 자기가 생산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상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가격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정확한 실명제도와 이에 따른 리콜제도가 필요합니다.

강경선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유통명령제 지속과 품질규제를 통한 품질향상의 필요, 감귤의 안전성 부각, 그리고 생산되는 시기에 출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하시기가 중복되고 엉키면 가격은 동반 하락합니다.

그럼 산지에서의 유통명령제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김기훈 보고서 자료와 여러 전문가들께서 감귤의 품질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생산자들도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정책당국에 좋은 품종 보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년 유통명령제 시행 결과 총 적발건수는 602건입니다. 이 중 약 84%가 크기에 의한 비상품 감귤 출하로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상품 감귤의 처리가 유통명령제 성패의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모든 비

특집 I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성과와 향후과제

상품 감귤은 100원/kg에 수매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번과와 0번과·10번과의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1·9번과의 가격은 200원/kg으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쥬스 등의 가공제품 값은 계속 오르는데 2000년 이후 원료가격은 1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인 경우 세일기간이 되면 가격 인하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양준 작년 유통명령제 시행은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유통명령제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당시 가격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 시기는 성출하기라 여느 해에도 가격하락이 있는 시기이지만 평년인 경우 이 시기의 가격낙폭은 약 21% 수준이지만 작년인 경우에는 34~35% 수준으로 평년 보다 더 컸습니다.

따라서 유통명령제가 감귤 가격상승, 혹은 감귤 조수입 증가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유통명령제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기반조성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감귤유통 관련 상인은 400~500명, 선과장 800개, 감귤농가 35,000명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대규모 선과장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과장 허가제 및 신고제를 통하여 유통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하체계 정비도 필요합니다.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등록하

지 않은 상인 출하분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유통명령제가 필요한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행의 물량규제 중심이 아니라 품질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장상자의 실명제를 통하여 정확한 등급의 품질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주감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경선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의 차등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통명령제 기반조성이 미흡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제주감귤은 개인출하 중심체제입니다. 선과장 컨트롤(control)이 필요합니다.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등록제는 최근에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 생산자의 실명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여서 출하하더라도 다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전문가이신 최지현 연구위원과 김동환 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시장개방화시대는 소비자 지향적인 시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방화시대에 농산물 가격을 높이기 위한 유통명령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개방화시대에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창출은 품질향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소비자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감귤은 12개 품목 중 10위입니다. 중산층 이상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맛을 중요시 합니다. 소비자의 전체 식료품 지출비중 중 과일에 지출하는 비중은 7~8%에 수준으로 이 수준에서 품질이 좋은 과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지향적인 유통명령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유통명령제를 놓고 할 것



이냐 말 것이냐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유통명령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800여개 선과장에서의 품질 및 생산량 규제는 어렵습니다. 대형 선과장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계산제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농가별 기술차이 때문에 공동계산제 체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는 폐원 및 경영이양직불제 등 산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농협의 지도원을 더욱 더 활용하여 품질을 높여야 하며, 자조금 조성액도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품질향상입니다.



김동환 유통명령제는 1998년 농안법에 법제화되었으나 작년 제주지역의 감귤에서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감귤 유통명령제의 성과 분석은 유통명령제의 첫 시행이고, 또한 전체적으로 과일이 과잉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서 예외주시하고 있는 주요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생산자측의 소득보전을 위해 소비자 임여를 생산자 쪽으로 이전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유통명령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명령제 성과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몇몇 분들은 성과가 크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영준 상무께서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통명령제의 성과 파악은 어렵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유통명령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해거리와 태풍 매미 등으로 물량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격상승 원인을 따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유통명령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과가 없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유통명령제에 의해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농가는 다시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가격하락과 동시에 생산량 조절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순환적인 모습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유통명령제가 중요수단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통명령제와 같이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보다는 썬키스트와 같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생산량 조절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썬키스트인 경우 농가의 약 65%(3,000명)가 가입되어 있고, 농가 규모도 크고 물량도 엄청납니다. 대형 packing house는 50개 정도 됩니다. 품질관리도 매우 엄격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에 대해서만 썬키스트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제도를 완벽하게 구축,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썬키스트는 1920년대 대공황 때 자구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협,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개인 등 각 주체에서 50%만 조직화하여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강경선 전문가분들도 품질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통명령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통명령제의 시행에 앞서 기반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난립되어 있는 작목반 등이 대형 선과장을 통해 통합되어야 하며, 또한 공동계산제도도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작년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소비자 편익이 마이너스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과장 규모화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작년에 산지폐기는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유통명령제의 실시와 산지폐기

특집 I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

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 유통명령의 효력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께서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한동주 유통명령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부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작년 산지폐기와 관련하여 농가가 손해를 보았다면 유통명령제 제안을 하

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입장인 듯합니다.

유통명령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유통명령제를 도내로 한정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통명령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게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농림부에 농안법 개정도 건의한 상태입니다. 농안법을 개정하는데 2년 정도 걸린다 하였습니다. 수탁금지 조항은 유통명령제로 해결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양준 공정위가 유통명령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양을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문제제기를 피해가는 방법은 품질규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순재 조합장으로서 작년 유통명령제 시행을 지켜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과 상인 출하비율은 50 : 50입니다. 농협도 물론 유통명령제 위반 사

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상인인 경우 위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태료 500만원만 내면 어느 수량도 출하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500만원 수준은 유통명령제를

위반함으로써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과태료를 10배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또한 농협은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만 선과하는데 상인은 새벽까지 선과합니다. 새벽 시간에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과시간 규제도 필요합니다.

1번과와 9번과 문제입니다. 농협인 경우 1·9번과를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밭폐기로 산 상인들은 1·9번과를 재래시장으로 유통시켰습니다. 때문에 농협에 출하한 농가들은 상인에게 팔았으면 이익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불평합니다.

강경선 토론자 거의 대다수가 유통명령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통명령제는 품질규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칼자루를 친 공정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독과점법에 유통명령제가 해당된다고 하면 농림부가 농안법에서 유통명령 조항을 삭제해야 됩니다. 아니면 외국식으로 빠져나가는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유통명령제는 감귤에 처음 시도된 정책입니다. 다른 농산물에도 공급과잉이 되면 과급될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비자쪽에서 오신 강광파 이사님은 명령제가 소비자에게 마이너스를 안겨 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광파 유통명령제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들은 제한된 소비에서 어떻게 하면 감귤을 더 팔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품질향상입니다.



고성보 발표자로서 답변을 대신하여 한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부 관계자들을 토론회에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오픈된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감귤유통명령제는 시장출하물량 감축을 통한 가격상승으로 감귤농가소득만을 증대시키려는 일종의 담합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감귤유통명령 수혜자에 대해 감귤농가는 산지유통인, 감귤농가의 순이며, 산지유통인은 소비자유통인, 감귤농가의 순으로, 소비지도매인은 소비자를 1위로 꼽아 산지에서의 대답과 상이하며, 다음으로 감귤농가, 산지유통인의 순으로 대답했습니다.

즉, 응답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소비자, 생산자, 유통인 모두가 유통명령제의 수혜자임을 알 수 있어, 유통명령제는 감귤 관련 모든 경제주체에게 이득을 초래하는 상생의 전략이라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2003년산 비상품감귤 기준이 선과규격(0번과, 10번과, 1번과, 9번과) 위주로 되어 있어 품질을 높이려는 의도보다 물량감축에 초점을 주고는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과거의 선과규격별 과실품질조사 결과를 평균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감귤유통명령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품 분류 기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과규격별 노지감귤의 품질(1999~2003년 평균)을 보면 소과일수록 당도가 높지만, 산도가 역시 높아 당산비(당도/산도)는 낮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0번과에서 2번과까지는 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당산비가 8.2 이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품선별 기준은 소과를 비상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소과인 경우 껍질을 깔 때 속에 있는 알맹이까지 붙어 나와 손이 더러워지는 등 감귤소비 이유 중의 하나인 간편화

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을 잃기 쉽다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대과는 당산비는 높지만 0번과에 비해 9번과와 10번과는 0.5브릭스 이상 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과일 품질 선택기준인 일정 수준의 당도 하에서 적절한 당산비를 원하는 기준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생산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기술이 뛰어난 농가는 소과와 대과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과 소비자 도매인이 품질개선을 원하는 내용 중에 균일한 감귤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현재 유통명령제의 비상품 기준의 논리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흥식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공정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감귤 관련 대표를 구성, 공정위를 방문하여 왜 해야 되는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품질입니다. 브랜드도 중요합니다.

강경선 공정위를 방문해 설득하시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김동환 유통명령제의 목적은 품질개선인데 실제 시행은 물량(크기)으로 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품질규격을 좀 많이 정해서, 품질을 강조하면 공정위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강광파 800개 선과장에서 나오는 감귤 규격이 일정치 않습니다. 유통명령제 하기 위해서는 선과장마다 규격이 통일돼야 하고, 품질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단위 선과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병호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관련해서는 코멘트 할 입장은 아닙니다. 명령제의 지속 시행여부를 포함하여 소비자적 관점, 수요자의 입장에서 성과에 대한 판단이 좀 더 강하게 고려되지 않고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발표내용을 보면 어떻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덜 설득적입니다. 논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정책 포지션을 다르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수요자적 관점에서 접근, 평가가 필요합니다.

강경선 유통명령제는 중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문

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금년도 과잉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유통명령제 시행과 관련 어디에선가 빨리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9번과 전부해 봐야 10~13만톤 정도인데 이 물량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는 것은 모기 한 마리에게 장칼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가 뭐라 한다고 농림부가 부정적인데, 농림부 정책이 이렇게 허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제주도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는 하지 않고 농림부·공정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6월입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